

2007. 11. 23(금)

제1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건  
및 규칙안 2건 등 11건

제 안 설 명 서

총 무 위 원 회

## 【 목 차 】

1.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3. 거창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4.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5. 거창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6. 거창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7.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8.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5
9.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10.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1
11. 거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6

<의안번호 제2007- 43호>

# 〔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 「지방자치법」 제54조 → 제62조(안 제1조)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

1) oo의 규정에 의하여 → oo에 따라(안 제1조·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2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u>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제62조에 따라</u>----- ----- ----- -----</p>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 ② (생략)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 임기간으로</u> 한다.</p>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남은 임기로</u> -----</p>
<p>제7조(특별위원회) ① (생략)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p>	<p>제7조(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u>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p>

<의안번호 제2007- 44호>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되고, 같은 법 시행령(2007. 10. 4)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1) 「지방자치법」 제36조 → 제41조 (안 제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 제52조 (안 제1조)

2)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 제104조제2항, 제104조 내지 제107조 →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08조 및 제111조 → 제117조 및 제120조 (안 제5조)

3) 「지방자치법」 제36제3항 → 제41조제3항(안 제6조)

4) 「지방자치법」 제36제4항 → 제41조제4항(안 제9조, 제9조의3)

제36제5항 → 제41조제5항(안 제9조)

5) 「지방자치법」 제37제2항 → 제42조제2항(안 제9조의2)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

1) 00의 규정에 의하여 → 00에 따라(안 제1조·제7조)

2) 00의 규정에 의한 → 00에 따른(안 제1조·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제104조, 제113조부터 제117조, 제120조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6조”를 “제41조”로,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법 제37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3제3항 중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을 “거창군의회회의 규칙”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b>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b> 현지확인<del>의</del>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b>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b>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거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p> <p>④ (생략)</p> <p>⑤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b>형사소송법</b>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b>법 제41조제4항에 따른</b>-----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b>법 제41조제5항에 따른</b>-----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b>형사소송법</b>」-----</p>
<p>제9조의2(대리 출석 답변 등) 군수는 <b>법 제37조제2항 단서</b>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조의2(대리 출석 답변 등) ----- <b>법 제42조제2항 단서</b>에 따라 관계 공무원----- ----- ----- ----- -----</p>
<p>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p> <p>① ~ ② (생략)</p> <p>③ <b>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b>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p>	<p>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b>법 제41조제4항에 따라</b>----- ----- ----- ----- -----</p>
<p>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b>제12조의 규정에 의한</b>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b>제13조의 규정에 의한</b>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b>거창군의회 회의 규칙</b>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p>	<p>제16조(징계) ----- <b>제12조에 따른</b>----- ----- -----<b>제13조에 따른</b>----- ----- -----<b>거창군의회 회의 규칙</b>----- -----</p>

<의안번호 제2007- 45호>

거창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를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로 띄어쓰기 함.

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 1) 「지방자치법」 제37조 → 제42조(안 제1조)
- 2)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 → 제113조부터 제116조(안 제2조제3항)
- 3) 「지방자치법」 제108조 → 제117조(안 제2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 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7조에 따른”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u>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u></p>	<p>제명 <u>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u>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 -----</p>
<p>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략)</li> <li>3. <u>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u> 소속 행정기관장</li> <li>4. (생략)</li> <li>5. <u>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u> 하부행정기관의 장</li> </ol>	<p>제2조(범위)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현행과 같음)</li> <li>3. <u>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u> -----</li> <li>4. (현행과 같음)</li> <li>5. <u>법 제117조에 따른</u> ----- ---</li> </ol>

<의안번호 제2007- 46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되고, 같은 법 시행령도 전부개정(2007. 10. 4)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지급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 1) 「지방자치법」 제32조 → 제33조(안 제1조)
- 2) 「동법시행령」 제15조 → 제33조(안 제1조)

나.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 1) 월정수당 월 1,416,000원 → 2,130,18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월 1,416,000원”을 “월 2,130,180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제7조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철 도 운 입	선 박 운 입	항공 운입	자동차 운 입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2등급 이 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2등급 이 상의 등급 구별이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1 등 정액	실비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 하는 실비액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 하는 실비액	2 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 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 요금을 필요 로 하는 경 우에는 그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 여 침대요금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그 실비액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32조</u>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제33조</u>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 ----- ----- -----</p>
<p>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p> <p>① (생략)</p> <p>② 월정수당은 <u>월 1,416,000원</u>으로 한다.</p>	<p>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월 2,130,180원</u>-----</p>

<의안번호 제2007- 47호>

[ 거창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띄어쓰기 함.

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 「지방자치법」 제82조·제83조 → 제90조·제91조(안 제1조)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

1) oo의 규정에 의하여 → oo에 따라(안 제1조)

3) oo의 규정에 의한 → oo에 따른(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90조와 제91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u>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u>	제명 <u>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u>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자치법</u> 」 제90조와 <u>제91조에 따라</u> ----- ----- ----- ----- -----
제4조(전문위원) ① ~ ② (생략) ③ 전문위원은 <u>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u>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전문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1항과 제2항에 따른</u> ----- ----- -----

<의안번호 제2007- 48호>

[ 거창군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되고, 같은 법 시행령도 전부개정(2007. 10. 4)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1)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 제134조제3항(안 제1조)

「동법시행령」 제46조·제47조 →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안 제1조)

2) 「지방자치법」 제56조 → 제64조 (안 제3조)

3)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 → 제84조제3항 (안 제9조)

나. 정확하고 자연스런 문장의 구성

1) oo조의 규정에 의한 → oo조에 따른

2) oo조의 규정에 의한다 → oo조에 따른다

3) oo조의 규정에 의하여 → oo조에 따라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34조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 · 제83조 · 제8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5조제3항”을 “제134조제3항”으로,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64조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p> <p>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제64조에 따른다</p> <p>④ -----별지 서식에 따른-----</p>
<p>제7조(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생략)</p> <p>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p>	<p>제7조(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제2조에 따라-----</p> <p>----- 제35조에 따른-----</p> <p>---</p>
<p>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일비의 지급) ① <u>제4조의 규정에 의한</u> 위촉 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u>다만, 국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국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② (생략)</p>	<p>제10조(일비의 지급) ① <u>제4조에 따른</u> ----- ----- -- 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일비의 계산) ① <u>제10조의 규정에 의한</u> 일비의 지급은 <u>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u>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국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p> <p>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에 공휴일과 <u>제12조의 규정에 의한</u>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p>	<p>제11조(일비의 계산) ① <u>제10조에 따른</u> ----- ----- <u>제4조제2항에 따른</u> ----- ----- ----- ----- -----</p> <p>② ----- ----- <u>제12조에 따른</u> ----- -----</p>

<의안번호 제2007- 49호>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되고, 같은 법 시행령도 전부개정(2007. 10. 4)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1)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 제34조(안 제1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3 → 제35조(안 제1조)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 제33조 (안 제2조)

나. 정확하고 자연스런 문장의 구성

1) oo조의 규정에 의한 → oo조에 따른

2) oo조의 규정에 의하여 → oo조에 따라

3)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3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 “직무”라 함은” 을 “ “직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율” 을 “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 “유족”이라 함은” 을 “ “유족”이란” 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 “장애”라 함은” 을 “ “장애”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상해”라 함은” 을 “ “상해”란” 으로 한다.

제9조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10조 본문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 ----- -----</p>
<p>제2조(정의) (생략)</p> <p>1. (생략)</p> <p>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p> <p>3.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p>	<p>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 ----- 각 호-----</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각 호----- ----- -----</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 각 호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p> <p>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 “장애”란 ----- ----- -----</p> <p>② ----- “상해”란 ----- ----- -----</p>
<p>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 -----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회의 구성)</p> <p>① (생략)</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 4. (생략)</p> <p>③ (생략)</p>	<p>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회의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각 호의 어느 하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4. (생략)</p>	<p>제10조(심의회 기능) ----- 각 호 ----- ----- 1. ~ 4. (현행과 같음)</p>

<의안번호 제2007- 50호>

[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서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되고, 같은 법 시행령(2007. 10. 4)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 1)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 → 제44조·제45조·제47조(안 제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 제54조 (안 제1조)
- 2) 「지방자치법」 제118조 → 제127조 , 제125조 → 제134조 (안 제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127조, 제134조
-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제39조·제41조”를 “제44조·제45조·제47조”로,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4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7조에 따른”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u>제38조·제39조·제41조</u>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u>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제44조·제45조·제47조</u> -----            ----- <u>제54조에 따라</u> -----            -----            -----            -----            -----            -----</p>
<p>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u>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u>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u>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u>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③ (생략)</p>	<p>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            ----- <u>법 제134조에 따른</u> -----            -----            -----            ② ----- <u>법 제127조에 따른</u> -----            -----            -----            ③ (현행과 같음)</p>

<의안번호 제2007- 51호>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 제38조(안 제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의3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34조의 3</u> <u>규정에 의한</u>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제38조에 따른</u>---</p> <p>-----</p> <p>-----</p> <p>-----</p> <p>-----</p>

<의안번호 제2007- 52호>

# 〔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안 설 명 서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 1) 「지방자치법」 제63조 → 제71조(안 제1조)
- 2)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 → 제63조제1항 (안 제14조)
- 3) 「지방자치법」 제71조 → 제79조 (안 제70조)
- 4) 「지방자치법」 제78조 → 제86조 (안 제82조)

나.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제2항).

다. 군정질문의 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하는 것을 변경하여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6조제4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3조, 제71조, 제79조, 제8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

#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3조”를 “제71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5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제4항 중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제71조”를 “제79조”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제78조”를 “제86조”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71조 ----- ----- ----- -----</p>
<p>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p>	<p>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 ----- 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신설)</p>	<p>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 ----- ----- -----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6조(군수의 출석요구)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p>	<p>제66조(군수의 출석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b>제71조</b>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원인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생략)</p>	<p>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b>제79조</b> -----            -----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b>제78조</b>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 ⑤ (생략)</p>	<p>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b>제86조</b>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p>

<의안번호 제2007- 53호>

# 〔 거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안 설 명 서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07. 10. 4)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거창군의회 청원 심사규칙”으로  
    띄어쓰기 함.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 제60조(안 제1조)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

    1)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안 제4조·제10조)

    2) 〇〇의 규정에 의하여 → 〇〇에 따라(안 제1조·제5조)

    3) 〇〇의 규정에 의한 → 〇〇에 따른(안 제5조·제1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거창군의회 청원 심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u>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 시행령</u>」 <u>제60조에 따라</u>----- ----- ----- -----</p>
<p>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1. ~ 4. (현행과 같음)</p>
<p>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u>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u>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의장은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u>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u>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5조(이의신청) ① ----- <u>제4조제3호에 따라</u> ----- ----- ----- ② ----- <u>제1항에 따른</u> ----- ----- ----- ----- <u>제6조제3항에 따른</u> ----- ----- -----</p>

현행	개정안
<p>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p> <p>1. ~ 3. (생략)</p>	<p>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u>제9조의 규정에 의한</u>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u>지방자치법</u> 및 <u>거창군의회 회의규칙</u>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p>	<p>제16조(징계) ----- <u>제9조에 따른</u> ----- ----- 「<u>지방자치법</u>」 및 「<u>거창군의회 회의규칙</u>」 ----- -----</p>